

서호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서호면
- 감사기간 : 2018. 10. 23. ~ 2018. 10. 26. (4일간)
- 대상기간 : 2016. 10. 18. ~ 2018. 10. 22. (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일반행정 분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는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 단기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위험에 따른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50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p>【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p>
	이륜차 사용신고 수입인지 미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2017년 ~ 2018년 신고 수리한 총 8건(24,000원)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4호】</p>
세출분야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구금액의 2.5%, 물품의 경우 1.5%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채매출액 산정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을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p>서호면에서는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공사 1건에 대해 10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p> <p>【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0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법인 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납부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법인균등분) 8건 440,0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p>【영암군사무분장규정 및 재무과-17356(2018.7.3.)】</p>
	취득세(건축물, 이륜차)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신고·납부 안내하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14건 15,263,890원이 누락 된 사실이 있음. <p>【지방세법 제20조】</p>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소득조사(표)를 기준으로 적격자를 추천해야 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60명의 지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5년이 초과된 소득조사자료나 조사 자료 없이 마을이장 등 의견을 근거로 소홀히 추천하였음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 지도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침에 의하면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토록 되어 있고 읍면에는 급식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토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지도점검, 감독, 정산 등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농업분야	가축방역(구제역 백신) 약품 보관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는 소규모 구제역 백신(영세농) 공급분에 대해서는 수령즉시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 수급상황을 관리함은 물론 정기(수시)로 관내 사육하는 소규모농가(소50두 이하, 돼지1천두 이하, 염소300두 이하)에 공급함에 있어 농가별 접종대장은 별지와 같이 작성비치 하였으나 구제역 백신을 수불대장 없이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냉장고의 약품보관 상태도 구제역 백신외(돼지열병)등과 구분없이 가축 약품을 미 정리정돈 상태로 혼합 보관하고 있는 등 가축방역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p>
	2018년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업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 45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지침에 따른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격 유무와 지급대상 적격농지를 신청서에 담당공무원 날인 확인을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p>【 친환경농업과-781(2018.01.12.)호 】</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p>건설도시 분야</p>	<p>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준공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는 『서호 금강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준공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코아채취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p>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압비를 포함한 총 금액 200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p> <p>【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 】</p>
	<p>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는 상기 『서호 회현마을 정지주변 정비사업』 외 1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에 중복 배치 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p>
	<p>환경관리비 정산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면에서는 『서호 송산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하였으나 준공 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미 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p>따라서 발주부서에는 준공 전 환경관리비 정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47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음.</p> <p>【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p>